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내용과 과정

2021.3.30.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안인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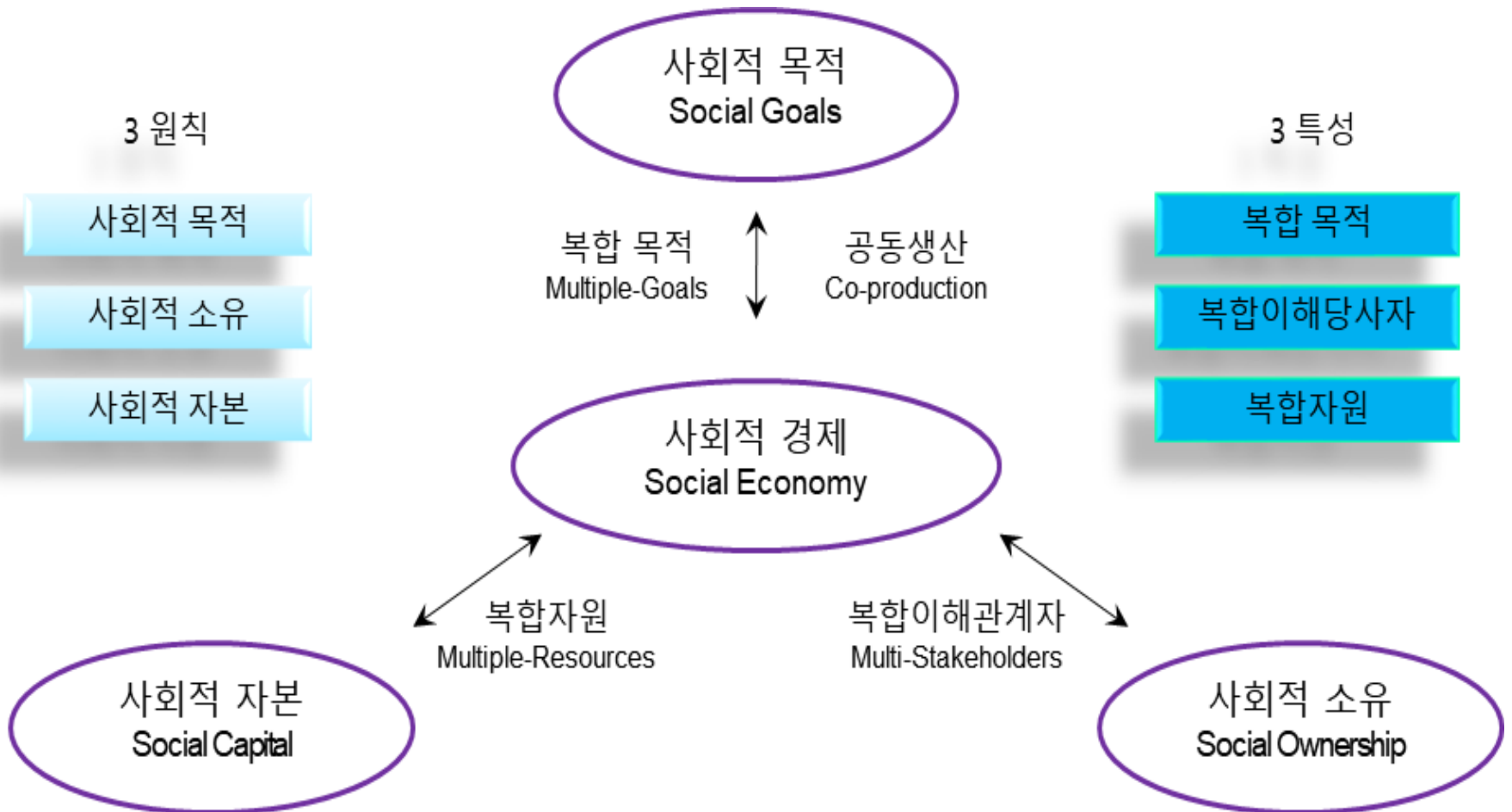
사회적경제란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회연대적 개입전략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2006, 장원봉

2

사회적경제 운영 원리



3

사회적경제 운영 원칙

- ①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돈)보다 우선한다.
- ② 구성원 자격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 ③ 조직은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 ④ 구성원, 이용자에게 보편적 이익이 고루 안배 되어야 한다.
- ⑤ 연대와 책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⑥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⑦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구성원의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4

사회적경제의 범위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주체

자료 : 정태인 <사회경제론-공동체 발전과 물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5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법	법 제정일	소관 부처
농업협동조합법	1957. 2. 14 법률 436호	농림수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1.12. 27 법률 884호	중소기업청(혁신인사기획팀)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1. 20 법률 1013호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63. 5. 29 법률 1347호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신용협동조합법	1972. 8. 17 법률 2338호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과)
산림협동조합법	1980. 1. 4 법률 3231호	산림청(산림경영지원과)
새마을금고법	1982.12. 31 법률 3622호	행정안전부(지역경제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 2. 5 법률 5743호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 1. 3 법률 8217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	2011.12.26 법률 11211호	기획재정부

6

사회적경제기본법 필요성

- ① 유사한 운영원리를 지닌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 창조를 도울 수 있도록 함.
- ② 정책의 실행이 부처별로 부문화되어 통합성이 떨어지는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함.
- ③ 육성법과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음.


7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추진 경과 (국회)

국회	제안 년도	제안자	소속 정당	발의자 수	처리 상태
19대	2014년 4월	유승민	새누리당	67	임기만료폐지
	2014년 10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65	임기만료폐지
	2014년 11월	박원석	정의당	10	임기만료폐지
20대	2016년 8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27	임기만료폐지
	2016년 10월	유승민	새누리당	15	임기만료폐지
	2019년 3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10	임기만료폐지
21대	2020년 7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15	소관위심사
	2020년 7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14	소관위심사
	2020년 10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21	소관위접수
	2020년 11월	장혜영	정의당	10	소관위접수
	2020년 11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10	소관위접수

8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추진 경과 (민간)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시민행동
전국대회
2018년 2월 7일 오전 10: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시민경제

전국에서 사회적경제를 일구어온 모두의 합성으로
2월 국회에서의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따듯한 경제, 협동사회 실천을 선언합니다.

기본법 제정 필요성 / 시민행동 활동보고 / 연대사 / 실천선언
기본법 제정 촉구서 및 실천선언문 전달식

- 2014,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순회 좌담회
- 2017,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기본법 법안 마련
- 2017, 기본법제정시민행동 전국대회 개최
- 2020, 기본법제정시민행동 캠페인 진행



8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추진 경과 (민간)

사람중심 시민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인증샷, 해시태그(#)로 응원해주세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튼튼해집니다!
 사람중심 시민경제가 속속 큼니다!

1. 지지 인증샷을 찍는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 으로 태그 걸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지지하기 참~ 쉽죠? ^^

* 소중한 인증샷은 응원을 등록 담아 법안 논의 중인 국회에 보내드립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X

- 2014,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순회 좌담회
- 2017,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기본법 법안 마련
- 2017, 기본법제정시민행동 전국대회 개최
- 2020, 기본법제정시민행동 캠페인 진행



사회적경제 기본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촉구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26명에게 촉구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사회적경제의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참여
campaigns.kr '사회적경제기본법' 검색

지금 촉구하기 →



9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 구성 측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및 추진체계, 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7장 보칙 규정으로 구성

• 내용 측면

(계획) 국가차원에서 5년 단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입각해 각 부처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지역단위에서도 국가의 계획과 조율되는 방식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조정) 정책조정을 위해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 광역단위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하도록 함.

(실행) 실행기관으로서 기재부장관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시도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권역별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였음.

(지원)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민간자원 연계, 교육훈련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10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김영배의원안
목적	<p>○사회적 경제의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 (제1조)</p>	<p>○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성장, 지속가능한 생활기반 구축,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제1조)</p>

10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김영배의원안
목적	<p>○사회적 경제의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 (제1조)</p>	<p>○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성장, 지속가능한 생활기반 구축,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제1조)</p>

10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김영배의원안
정의	사회적 경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3조제1호)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인권 신장,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평등한 고용기회, 국민 건강의 증진, 지역공동체 재생,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을 포괄하는 가치(제3조제2호)	○규정 없음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법인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제3조제3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제3조제4호) ○사회적경제연대조직(제3조제5호) ○그 밖에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제3조제6호)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법인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문화사업자, 소셜벤처 등 (제3조제2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제3조제3호) ○사회적경제연대조직(제3조제4호) ○그 밖에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 중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 단체 (제3조제5호라목)
	사회적 금융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제3조제7호)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며 참여자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투자·융자·보증·출연, 보조금의 집행 등을 포함 (제3조제6호)

10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김영배의원안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정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계정 등을 마련해야 함 (제4조)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원칙 등과 맞게 하며, 이 법 발효 후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제7조)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함 (제7조)

10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김영배의원안
기본계획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상향식, 5년, 정부)(제8조) ○부문별 발전계획안/시행계획 (5년/1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9조)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5년/1년, 시·도지사) (제10조) ○시행계획의 협의·조정(제11조),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제12조), 지역발전 시책의 추진(제1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상향식, 5년, 기재부장관)(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1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9조)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5년/1년, 시·도지사) (제10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14조)
사회적경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제15조·제16조·제17조) -위원장 2명(기재부장관, 민간위원 중 1인) 포함 40명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및 전문위원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제18조) ○협의 및 조정(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제20조), 자료제출 요구권(제44조), 국회 및 시·도의회 보고(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제15조) -위원장 2명(기재부장관, 민간위원 추천 1인) 포함 40명 이내, 민간위원 과반수 -실무위원회와 사무지원조직(이하 사무처) 설치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제18조) ○협의 및 조정(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제20조), 자료제출 요구권(제17조), 국회 및 시·도의회 보고(제39조)
사회적경제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경제분야를 국민 통계의 분석 단위에 포함(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경제분야를 국가 통계의 분석 단위에 포함 (제21조)

10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김영배의원안
사회적 경제연대조직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22조)	○사회적경제연대조직(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22조)
사회적 경제원	○한국사회적경제원(기재부 운영·감독 총괄, 고용부·행자부 협력) (제23조) -사회적기업 진흥원을 확대 개편	○한국사회적경제원(기재부 소속, 행정안전부 등 공동출연으로 설립) (제23조)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존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권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기재부 지정, 시·도 단위)(제24조)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자체 설치, 시·도 단위)(제25조)	○시·도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정 (제24조)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관설민영, 민·관공동운영, 민간 사무위탁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 (제24조②) ○시·도 지원센터에 대한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평가방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제24조④)

10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김영배의원안
기금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설치 (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 - 재원: 정부·지자체 출연금,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등 - 용도: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운영 및 금융 지원, 사회적 경제 자본시장 조성 등 - 운용·관리: 기재부, 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역기금 설치 가능(지자체)(제28조) ○민간기금 설치 가능(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금융기관)(제26조·제27조·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의 지정 (제27조) -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 - 정부는 사회적 금융 정책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민관협력 방식으로 기금 운영을 담당할 사회적 금융 기관을 기금의 운영기관(이하 “기금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육성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조성을 위해 기금운영기관에 대해 출연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기금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제33조) ○사회적 성과지표 개발 및 보급 (제34조)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공유지·국공유재산 등을 임대(제35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며, 일반기업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시 세제 상 감액 또는 면제 혜택 가능(제36조) ○설립·운영의 전문인력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하고, 조직 경영컨설팅을 지원해야하며, 시민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정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라 한다)를 개발 (제29조) ○(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제31조 ○(교육·훈련 등 지원) 제32조

10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윤호중의원안	김영배의원안
민간참여· 국제협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제38조)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제39조) ○국제협력 등(제40조) ○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 및 참여 증진(제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제33조)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제34조) ○국제협력 등(제35조) ○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 및 참여 증진(제36조)
공개· 공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공개·공시의무(제42조·제4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공개·공시의무(제37조)

- 찬성의 논거

-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 기획재정부(협동조합기본법),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행정안전부(마을기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의 통합적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

- 반대의 논거

- 사회적경제 부문의 다양성, 자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개별법을 대체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다

- 쟁점1. 정부 부처 내 이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 개편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 할 것인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두고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신설할 것인지에 관한 정부 부처 사이의 이견이 있다.

- 쟁점2. 정부와 민간 사이의 이견

-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금조성의 실효성을 이유로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함에 있어 구매액의 범위를 5%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 쟁점3. 민간 사이의 이견
 -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관련하여 농협, 신협, 신용협회의 포함 여부 등에 이해의 차이가 있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관련 이해 차이가 있다.

- 사회적경제의 보편성은 정당을 초월한다.
- 기본법은 기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발전을 열어주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 당사자의 제정 요구에 힘입은 입법 과정을 만든다.
-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
- 단기 계획

서명운동 결과를 가지고 4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4월 상임위원회 통과 촉구